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2015년 8월 pp.95~122
한국세무학회

합병시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 사례연구*

-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윤성만**

<요 약>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함께 자산, 부채 및 손익 등을 승계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조세전략을 수행함으로써 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세무상 대손충당금을 활용하여 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전략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3년 10월 1일에 있었던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사례와 2004년 3월 2일에 이루어졌던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사례이다. 먼저,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인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산건정성 분류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나 국민카드로 하여금 신용카드채권 등을 양질의 채권으로 분류토록 하여 대손충당금을 최소의 금액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대손충당금을 인식하면 그 만큼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증가하게 되지만 이 금액은 어차피 국민은행이 승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병 후에 국민은행은 승계받은 신용카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가능한 한 많이 인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국민은행의 조세전략효과로 동 전략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의 93.02% 약 200,852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외환은행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외환카드로 하여금 세무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최저설정율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을 극대화하였다. 법인세법상 동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은 본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아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전략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환은행의 조세전략효과로서 본 분석은 외환카드가 정상수준의 세무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선택할 경우에 부담할 법인세의 약 40.79%인 169,977백만원의 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제어> 대손충당금, 이월결손금, 조세전략, 합병, 은행

* 본 연구는 2014년 산학협동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조교수, ysm6123@seoultech.ac.kr

논문접수일 2015년 2월 22일 1차수정일 2015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26일

I. 서 론

우리나라 신용카드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와 양적성장 중심의 경영전략에서 파생된 경영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신용카드발급 건수와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최고조를 나타내는 반면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대손률이 높아졌으며, 경영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강구하고 있었다. 특히,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회사 은행의 자회사인 신용카드사는 합병을 통해 신용카드업의 부실과 경영의 문제점 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¹⁾

그러나 이러한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신용카드사)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은행)이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무상 대손충당금을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합병법인과 과세관청간에 분쟁이 있었다.²⁾ 그 대표적인 예가 국민은행의 국민신용카드사(이하 “국민카드”라고 함) 합병사례와 외환은행의 외환신용카드사(이하 “외환카드”라고 함) 합병사례이다.³⁾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4조와 45조에 따라 해당 합병이 사업목적의 합병,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조세회피의 방지목적, 구분경리 및 장부가액으로의 승계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모두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이들 은행은 세무상 이월결손금 승계를 통한 조세절감효과를 대신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세무상 결산조정사항인 대손충당금을 활용하는 조세전략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3~2004년에 있었던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사례와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방법을 분석하는 것이다.⁴⁾ 이를

-
- 1) 대표적인 합병으로 2003년 10월 1일 국민은행의 국민신용카드 합병, 2004년 3월 2일 외환은행의 외환신용카드 합병 및 2004년 4월 1일 우리은행의 우리신용카드 합병 등이 있었다.
 - 2) 외환은행과 과세관청간 분쟁은 조세심판청구인 국심2007서4945(2009.9.4)이며, 국민은행과 과세관청간 분쟁은 2010구합26056(서울행법, 2011.4.1)이다. 본 연구는 이 두 분쟁에서 합병법인인 은행이 결국 승소(인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가 아니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조세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3) 본 연구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신용카드사 합병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외환은행의 사례는 선행연구인 이호용과 최원석(2012)의 분석방법을 따랐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각 은행의 합병시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어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4) 정운오와 김갑순(2007), 정운오와 고종권(2007) 및 정운오 등(2008)의 사례연구에서는 세무계획측면의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본 연구는 보다 협의의 조세전략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즉, 선행연구들은 Scholes et al.(2002)의 모든 거래당사자, 모든 비용 및 모든 세금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세무계획관점으로 사례를 분석하는 반면, 본 연구는 합병법인, 세금비용 및 명시적 세금측면만을 고려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부재하며, 분석과정에서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해 두 은행간 합병 당시의 피합병법인의 과세지위, 대손충당금에 대한 조세전략차원에서의 세무처리 및 조세전략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합병과정 중 조세전략차원에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승계의 차선책으로 세무상 대손충당금의 승계방법을 이용하여 합병 후 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는 이하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Ⅱ장은 합병시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승계제도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합병시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 사례로서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사례와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사례를 상세히 소개한다. 이어서 제Ⅳ장은 합병시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의 효과분석으로 각각 사례에서의 경제효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Ⅴ장은 본 사례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Ⅱ. 합병시 이월결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승계제도 검토

본 연구는 기업 간 합병과 관련된 여러 제도 중에 이월결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승계에 관한 세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세법상 입장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대손충당금의 승계에 대한 세법규정을 검토한다.

1.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규정

1998년 12월 28일 법인세법 개정 이전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실무상으로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었다(법인22601-154, 1986.1.17). 그러나 개정 후에는 합병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의 역합병인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2008년 12월 26일의 법인세법 개정시 우량법인이 불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와 불량법인이 우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결손금 공제 범위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역합병인 경우에도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후 2009년 12월 31일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자산 장부가액 승계요건과 합병대가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었다(이호영·최원석, 2012).

이처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의 입장이 크게 1998년 12월 28일, 2008년 12월 26일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2003년 10월 1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2004년 3월 1일) 당시 법인세법 제44조와 제45조에서 다음과 같은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사업목적의 합병(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② 지분의 연속성(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조)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 ③ 사업의 계속성(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④ 조세회피의 방지목적(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 ⑤ 회계의 구분경리(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합병법인이 자산, 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
- ⑥ 장부가액으로 승계(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결손금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토록 하였다(박연희, 2005 ; 전병욱·최원욱, 2007).

위에서 검토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해서 정운오 등(2008)의 연구에서 다룬 하나은행 사례를 통해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사례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의 승계방법을 활용하여 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절감하는 조세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해서는 본 장의 제도검토에 한정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대손충당금 한도와 합병시 승계에 관한 규정

일반법인은 보유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여신전문금융법을 적용받는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채권 등의 자산을 자산건전성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적립기준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⁵⁾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법인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일정한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손충당금 한도액에 관한 규정은 <표 1>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표 1>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법인세법 연혁

개정일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시 기말 채권가액에 적용비율			비 고
	일반법인	금융회사		
		은 행	신용카드사 등	
1985.12.31이전	1%	1%		모든 법인의 한도 동일
1985.12.31		2%		은행, 신용카드사 등 한도증가
1994.12.31		선택 [2%, 대손실적률 ^{주2)}]	2%	은행의 한도증가
1998.12.31	Max [1%, 대손실적률]	선택[2%, 대손실적률]		신용카드사 등 한도증가
2000.12.29		선택 [Max(1%, 대손실적률), 표준비율 ^{주3)}]		은행, 신용카드사 등 한도증가
2007. 2.27		선택[1%, 대손실적률, 표준비율]		은행, 신용카드사 등 재량권 부여

주1) 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http://dart.fss.or.kr>)

주2) 대손실적률=(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주3) 표준비율=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5)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1>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5단계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정상’은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 카드자산, ‘요주의’는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고정’은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은 3월 이상 6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추정손실’은 6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과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이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법인구분 없이 모든 법인에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의 1%가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충당금한도액이었지만 1986년부터는 금융회사의 한도가 2%로 증가하였다. 1995년부터 금융회사 중 은행에 대해서만 2%와 대손실적률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도가 증가하였고, 1998년 12월 31일 개정시에는 은행과 동일하게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 모두 동일한 한도를 적용토록 개정되었다.

2000년 12월 29일에는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한도가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으로 한도가 증가되면서 금융회사는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과 표준비율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도가 증가되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2007년 2월 27일 개정시 금융회사에 대하여 1%, 대손실적률 및 표준비율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도선택의 재량권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사례가 2003년과 2004년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례당시의 대손충당금한도는 200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된다.

현행 법인세법상 이러한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 한도초과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법인세법 제42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합병사례의 당시 규정에도 일반적으로 피합병법인이 각종 평가와 재분류 등에 대한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될 수 없었지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손익과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이 동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금액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⁶⁾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사업목적의 합병,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및 구분경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무상 한도초과(손금불산입된)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외환은행은 피합병법인인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승계가능한 손금불산입할 대손충당금을 극대화하고자 세무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최소화하는 조세전략을 구사하였다.

Ⅲ. 합병시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 사례

1. 국민은행의 국민카드사 합병사례

가. 합병 배경과 과정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신용카드산업은 기업금융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소

6) 법인세법시행령(제17457호, 2001.12.31 일부개정) 제85조 제1항 제3호

매금융위주의 영업전략을 구사했으며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와 정부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복권제 등 정부의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카드시장은 크게 성장하였다. 1998년 64조원에 불과하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2001년에는 443조원으로 연평균 95.5%의 성장세를 보여준 것은 거시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선진화과정을 거치며 소매금융의 비중이 커진 결과이며, 또한 타 산업에서는 관찰할 수 없던 개별 카드사간의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은 신용카드업계 전체적으로 외형적 성장세가 다소 하락하여 총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623조원으로 전년 대비 40.6%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의 지속과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개별 신용카드사들이 전년대비 보수적인 영업과 마케팅 전략을 취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익측면에서는 연체율의 증가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으로 2002년 9개 신용카드사 기준 당기순이익의 규모가 3,109억원으로 전년도 24,870억원 대비 대폭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03년 1분기까지 지속되어 신용카드사 대부분이 2003년 1분기에 적자의 경영성적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국민카드사는 1987년 9월 25일 수권자본금 800억원과 납입자본금 200억원으로 설립되었고 1998년 8월 22일에는 동일 그룹내 유사업무기업의 통합을 통해 대형화와 금융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민할부금융(주)를 흡수합병하였으며, 1998년 12월 30일에 들어서는 유사 종합여신전문회사인 장은신용카드(주)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여신산업에서 대형법인으로서의 입지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카드사 지분의 74.27%(취득원가 약 4,125억원)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은행은 2003년 5월 30일 신용카드사업의 일원화를 통한 성장역량을 집중하고 자원배분의 적정성 및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계회사인 국민카드사를 흡수합병하기로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며, <표 2>와 같은 합병일정을 세웠다. 주권상장법인인 국민은행과 협회등록법인 국민카드사 간의 합병비율은 증권거래법인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W13,513), 1주일(W13,872) 및 종가(W14,850)의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W14,850) 중 낮은 가액(주당 ₩14,078)기준으로 0.442983으로 산정하였다.

국민은행은 2003년 5월 30일에 국민카드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9월 5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받았으며, 3일 후부터 10일간 국민카드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은행은 2003년 7월 24일 현재 국민카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에 2003년 9월 17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하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들에게 국민카드 1주당 국민은행의 보통주 0.442983주의 비율로 총 8,120,431주로 교부하였다.

〈표 2〉 국민은행의 국민카드사 합병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결의일		2003.05.30
합병계약일		2003.05.30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03.07.24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03.09.0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03.09.08
	종료일	2003.09.17
합병기일		2003.09.30
합병종료보고 총회일		2003.10.01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03.10.01

주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상 국민은행의 합병신고서

<표 3>의 산출근거에 따라 2003년 9월 30일 현재 국민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2.42%(= 8,120,431주 ÷ 336,379,116주)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⁷⁾

〈표 3〉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합병결의 내용

구 분	국민은행	국민카드
합병방법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	
합병이유	신용카드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성장역량을 집중하고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자원배분의 적정성 및 비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합병기일	2003년 9월 30일	
자본금	1,641,895,580,000원	366,000,000,000원
발행주식총수	336,379,116주	73,200,000주
주당금액	5,000원	5,000원
합병비율	0.442983	1
합병비율 산출근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의12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간의 합병가액 산출은 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출	
교부주식수	보통주 8,120,431주	

주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상 국민은행의 합병종료보고서

7)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규정에 따라 합병교부주식 발행주식총수가 합병기일 총발행주식총수의 5%미만인 경우에는 합병승인을 합병법인의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받는 대신 이사회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은행이 소유한 지분까지를 포함하여 신주를 발행했다라면 9.64%(=73,200,000주 × 0.442983 ÷ 336,379,116주)로 5%미만의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은행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국민은행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합병대가로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표 4>는 합병기일 2003월 9월 30일 현재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요약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법인은 지배-종속회사관계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이 두 법인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전과 후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할 만한 계정과목은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은 대출채권과 차입금이다.

<표 4> 합병 전 요약재무상태표(2003.9.30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병법인(국민은행)			피합병법인(국민카드)		
	내부거래 제거 전(①)	내부거래 제거 후(②)	내부거래 (②-①)	내부거래 제거 전(①)	내부거래 제거 후(②)	내부거래 (②-①)
현금 및 예금	7,543,522	7,543,522	0	39,139	33,343	(5,796)
유가증권	29,062,866	28,157,575	(905,291)	2,969,080	2,431,540	(537,540)
대출채권	133,299,297	134,539,349	1,240,052	6,854,723	4,676,700	(2,178,023)
고정자산	2,836,450	2,836,628	178	325,220	232,808	(92,412)
기타자산	8,895,431	9,008,831	113,400	407,247	729,779	322,532
자산총계	181,637,566	182,085,905	448,339	10,595,409	8,104,170	(2,491,239)
예수금	128,106,542	128,106,543	1		(5,797)	(5,797)
차입금	11,691,597	11,691,595	(2)	3,240,752	2,460,753	(779,999)
사채	17,181,146	17,181,146	0	4,951,891	4,932,045	(19,846)
기타부채	14,858,438	14,933,085	74,647	1,199,254	782,858	(416,396)
부채총계	171,837,723	171,912,369	74,646	9,391,897	8,169,859	(1,222,038)
자본금	1,641,293	1,641,293	0	366,000	40,603	(325,397)
자본잉여금	5,864,679	5,864,680	1	146,591	368,365	221,774
이익잉여금	2,033,157	2,409,597	376,440	691,969	(376,438)	(1,068,407)
자본조정	260,714	257,966	(2,748)	(1,048)	(98,219)	(97,171)
자본총계	9,799,843	10,173,536	373,693	1,203,512	(65,689)	(1,269,201)
부채와 자본총계	181,637,566	182,085,905	448,339	10,595,409	8,104,170	(2,491,239)

주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상 국민은행의 2003년 사업보고서

은행업과 신용카드업간 대출 내부거래는 국민카드 대출채권가액의 약 32%이며 차입거래는 국민카드 차입금 중 약 24%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간 높은 비중의 차입-대출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⁸⁾ 또한 자본금의 내부거래 비중이 국민카드 자본금의 89%인데 이는 2003년 5월 30일 현재 국민은행이 보유한 지분 74.27%에서 무려 약15%가 늘어나 상당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미희·육윤복, 2011).

나. 국민은행의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 :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흡수합병이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이기 때문에 합병기준일 2003년 9월 30일 현재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를 하였다.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을 <표 5>와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모두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다. 둘째, 국민은행은 국민카드 주주(국민은행 지분을 제외한 지분)에게 주식으로 총 8,120,431주를 교부하였다. 셋째, 국민은행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국민카드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 넷째, 구분경리로서 국민은행은 국민카드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부채 및 손익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였다. 그리고 다섯째, 합병간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국민카드의 자산을 승계하였다.

<표 5> 합병시 국민카드의 이월결손금 승계판단 결과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사업목적의 합병	충족	국민은행이나 국민카드 모두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
지분의 연속성	충족	합병대가의 100%를 국민은행 주식으로 교부
사업의 계속성	충족	합병이후에도 신용카드업을 계속 영위
조세회피목적의 방지	미충족	국민은행은 합병대가로 8,120,431주를 교부하였고 국민은행 총발행주식수의 2.42%에 해당
구분경리	충족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에 해당되는 사업부문별 구분 경리
장부가액 승계	충족	실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으로 승계

그러나 조세회피목적의 방지차원으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정운오 등, 2008). 즉, 합병대

8) 이러한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간 차입-대출거래는 기타자산과 기타부채까지 고려한다면 대출 내부거래는 국민카드 채권가액의 34.43% 그리고 차입 내부거래는 국민카드 차입금의 26.95%이다.

가로 교부한 주식 8,120,431주는 국민은행 발행주식 총수 336,379,116주의 2.42%로 10%미만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승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국민카드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을 통한 조세전략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게 된다. 첫째는 국민카드가 합병 전에 낮은 대손설정율의 적용 등 세무상 대손충당금설정한도를 축소하여 손금불산입액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를 피합병법인인 국민은행이 승계받도록 하는 방안이다.⁹⁾ 즉, 국민카드의 손금산입된 대손충당금은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지만 국민은행이 이러한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한도를 축소하여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을 극대화시키면 한도를 초과한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을 국민은행이 승계받아 향후 조세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둘째는 합병전 국민카드의 신용카드채권 등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불량이 아닌 정상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즉, 자산 건전성에 따라 양질의 신용카드채권으로 분류하여 가능한 한 장부상 인식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작게 하는 것이다. 결국, 합병 직전에는 장부상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과대계상으로 높은 합병대가를 치르더라도 합병 후의 동 채권을 불량채권으로 분류하여 세무상 대손충당금을 늘리는 방안이다.

위의 방안 중 국민은행이 선택한 조세전략은 후자의 방안이다. 합병 직전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건전성이 높은 양질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합병 후에는 국민은행이 이를 건전성이 낮은 불량채권으로 재분류함으로써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대손충당금으로 대체하여 조세부담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세웠다. 이러한 현상은 <표 6>에서도 관찰된다.

<표 6> 합병 전 요약손익계산서(2003.1.1~2003.9.30 기준)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국민은행	국민카드	합병 후
영업수익	12,456,432	2,203,397	14,659,829
영업비용	(11,978,040)	(1,902,184)	(13,880,224)
영업이익	478,392	301,213	779,605
영업외수익	670,656	27,656	698,312
영업외비용	(1,885,784)	(18,646)	(1,904,430)
경상이익	(736,736)	310,223	(426,513)
법인세비용	354,627	(25,850)	328,777
당기순이익	(382,109)	284,373	(97,736)

주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상 국민은행의 2003년 사업보고서

9)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직전의 요약손익계산서상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을 인식시 상대계정인 대손상각비가 포함된 영업비용이 영업수익 대비 86.33%인데 반해 국민은행의 영업비용은 영업수익 대비 96.16%로 이 두 법인 간 대손충당금 인식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합병 직전에 국민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였다면 이 비율 또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합병 전까지 회계기준 적용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합병시 조세전략을 염두해 둔 것이라고 <표 7>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율(=기말 대손충당금 잔액÷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가액)의 추이를 보면, 합병 전 2001년 2.05%, 2002년 1.83%로 대체로 낮은 편이었으나, 합병 일 속하는 회계연도 2003년에는 2.55%로 급증하였다. 이후 2004년 2.25%와 2005년 1.78%로 다시 합병 전의 대손충당금설정율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함에 있어서 대손충당금을 통해 조세전략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국민카드가 보유한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 9월 30일부로 합병을 하였고 합병 후에 동 채권을 재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높게 설정하는 방식의 조세전략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표 7> 국민은행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4	2003	2002	2001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3,118,775	3,910,044	2,378,696	2,271,179	1,826,700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1,726,632)	(3,859,517)	(2,728,891)	(1,485,962)	(547,770)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2,002,336)	(3,382,130)	(4,509,979)	(1,527,311)	(1,090,029)
② 상각채권회수액	452,235	286,464	767,718	269,533	97,123
③ 기타증감액	(176,531)	(763,851)	1,013,370	(228,184)	445,136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1,061,132	3,068,248	4,040,536	1,593,479	992,249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㉑)	2,453,275	3,118,775	3,690,341	2,378,696	2,271,179
5. 기말 총당금설정대상채권가액(㉒)	138,139,657	138,839,212	143,602,295	129,109,257	109,301,138
6. 대손충당금설정율(㉑÷㉒×100%)	1.78	2.25	2.55	1.83	2.05

주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상 국민은행의 2001년~2005년 감사보고서

10) 이러한 조세전략에 대해서 서울행법 2011.4.1 선고 2010구합26056판결에서는 “국민카드는 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2003.1.1부터 2003.9.30까지)에 대한 결산을 함에 있어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을 모두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국민은행은 이 채권을 장부가액대로 승계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피합병법인인 국민카드가 보유채권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합병법인 국민은행이 합병 이후에 비로소 합병으로 승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을 한 사안...(이하 생략)…”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외환은행의 외환카드사 합병사례

가. 합병 배경과 과정

1988년 5월 19일에 외환은행이 출자하여 설립된 환은신용카드로 신용카드업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 1월 1일부로 상호를 외환신용카드(이하 “외환카드”로 칭함)로 변경하였다. 외환카드의 주업무는 신용카드 발행, 이용 및 대금결제이었으며 1999년 1월 1일부로 외환할부금융을 흡수 합병하여 할부금융업무를 추가하게 되었다. 2001년 12월 31일부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상장법인으로서 설립후 여러 차례 증자를 거쳐 2003년 12월 31일 현재 수권주식수는 200,000천주(액면 5,000원)이고, 납입자본금은 319,500백만원(보통주식 63,900천주, 액면 5,000원)이며, 당기말 현재 외환은행은 외환카드의 총 발행주식수의 68.6%에 해당하는 43,838,938주를 보유하였다.

외환은행은 금융시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인력, 자산 등 경영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등 수익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양사의 주주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11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04년 2월 28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다. 동일자에 외환카드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3년 12월 15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와 2004년 1월 16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 1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외환카드 보통주 1주당 외환은행의 보통주 0.533689주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합병비율 0.533689는 주권상장법인인 외환은행과 외환카드간의 합병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기준주가방식으로 산정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출되었다. 즉, 기준주가는 ① 2003년 11월 27일의 종가(5,610원), ② 2003년 11월 27일 기산하여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종가(5,276원), ③ 2003년 11월 27일 기산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의 종가(5,585원) 등 3가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2003년 11월 27일 종가(5,610원) 중 낮은 가액(5,49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나머지 합병일정은 <표 8>과 같다.

<표 9>에서와 같이,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교부주식으로 5,981,895주의 신주를 발행했는데, 이는 2004년 1월 1일 현재 외환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0.92%(= 5,981,895주 ÷ 649,631,299주)에 해당되어 상법 제526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규정에 따라 합병보고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의 합병보고 공고로 갈음하였다. 만약 국민은행이 소유한 지분까지 포함하여 신주를 교부하였더라도 총 29,378,412(= 63,900,000 × 68.606% × 0.533689 + 5,981,895)가 발행되어 국민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4.52%(= 29,378,412 ÷ 649,631,299)에 그치게 되어 소규모합병 요건 5%미만을 충족하게 되었을 것이다.

〈표 8〉 외환은행의 외환카드사 합병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결의일		2003.11.28
합병계약일		2003.11.28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03.12.15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04.01.1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04.01.17
	종료일	2004.01.28
합병기일		2004.02.28
합병종료보고 총회일		2004.03.02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04.03.02

주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 : //dart.fss.or.kr](http://dart.fss.or.kr))상 외환은행의 합병신고서

〈표 9〉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결의 내용

구 분	외환은행	국민카드
합병방법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	
합병이유	금융시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인력, 자산 등 경영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등 수익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양사의 주주가치를 극대화시키고자 함.	
합병기일	2004년 2월 28일	
자본금	3,248,156,495,000원	319,500,000,000원
발행주식총수	649,631,299주	63,900,000주
주당금액	5,000원	5,000원
합병비율	0.533689	1
합병비율 산출근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의12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가액 산출은 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출	
교부주식수	보통주 10,706,372주	

주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 : //dart.fss.or.kr](http://dart.fss.or.kr))상 외환은행의 합병종료보고서

<표 10>은 합병기일 2004월 9월 30일 현재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요약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법인은 지배-종속회사관계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이 두 법인간 합병후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전과 내부거래금액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할 만한 계정과목으로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은 대출채권과 차입금이다. 신용카드업과 은행업 간 대출 내부거래는 외환카드 대출채권금액의 약 4.12%이며 차입거래는 국민카드 차입금 중 약 6.1%인데, 이는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간 높은 비중의 차입-대출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부거래의 비중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간 내부거래금액의 비중을 비교할 때, 대체로 낮은 편이다.¹¹⁾

〈표 10〉 합병 전 요약재무상태표(2004.2.28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병 전		합병 후	
	외환은행	외환카드	내부거래 제거 전	내부거래
현금 및 예금	3,689,901	37,097	3,726,998	8,379
유가증권	13,112,715	5,350	13,118,065	0
대출채권	39,994,612	2,344,298	42,338,910	96,601
고정자산	814,084	75,874	889,958	0
기타자산	7,479,885	600,584	8,080,469	7,129
자산총계	65,091,197	3,063,203	68,154,400	112,109
예수금	42,182,866	—	42,182,866	8,380
차입금	7,003,186	1,585,260	8,588,446	96,600
사채	4,368,846	2,022,175	6,391,021	0
기타부채	8,321,121	375,551	8,696,672	7,128
부채총계	61,876,019	3,982,986	65,859,005	112,108
자본금	3,194,625	275,238	3,469,863	245,329
자본잉여금	—	141,385	141,385	141,385
이익잉여금	(-)235,535	(-)1,339,825	-1575360	-416,623
자본조정	256,088	3,419	259,507	29,910
자본총계	3,215,178	(-)919,783	2,295,395	1
부채와 자본총계	65,091,197	3,063,203	68,154,400	112,109

주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상 외환은행의 합병종료보고서

- 11)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내부거래에서 차입-대출거래는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사간 거래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합병사건 내부거래보다는 대손충당금 설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나. 외환은행의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 :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흡수합병이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병기준일 2004년 2월 28일 현재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를 하였다. 외환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을 <표 11>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모두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다. 둘째,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주주(외환은행 지분을 제외한 지분)에게 주식으로 총 5,981,895주를 교부하였다. 셋째, 외환은행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외환카드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 넷째, 구분경리로서 외환은행은 외환카드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부채 및 손익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였다. 그리고 다섯째, 합병간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외환카드의 자산을 승계하였다.

한편, 조세회피목적의 방지차원으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합병대가로 교부한 주식 5,981,895주는 외환은행 발행주식총수 649,631,299주의 0.92%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은행 사례와 동일하게 외환은행도 외환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표 11> 합병시 외환카드의 이월결손금 승계판단 결과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사업목적의 합병	충족	외환은행이나 외환카드 모두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
지분의 연속성	충족	합병대가의 100%를 국민은행 주식으로 교부
사업의 계속성	충족	합병이후에도 신용카드업을 계속 영위
조세회피목적의 방지	미충족	외환은행은 합병대가로 5,981,895주를 교부하였고 외환은행 총발행주식수의 0.92%에 해당
구분경리	충족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에 해당되는 사업부문별 구분 경리
장부가액 승계	충족	실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으로 승계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은행은 승계받지 못하는 외환카드의 이월결손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즉,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아 합병 후 조세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외환은행이 선택한 조세전략으로 외환카드가 합병 전에 낮은 대손설정율의 적용 등 세무상 대손충당금설정한도를 축소하여 손금불산입액

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를 피합병법인인 외환은행이 승계받도록 하는 방안이다.¹²⁾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손금불산입된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요건이 사업목적의 합병,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및 구분경리인데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이 요건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환카드의 손금산입된 대손충당금은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외환은행이 이러한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환카드의 세무상 대손충당금한도를 축소하여 한도초과된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손금불산입된 대손충당금을 외환은행이 승계받아 향후 조세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이호영과 최원석, 2012).

이에 따라 외환카드는 법인세 신고시 1998년 사업연도부터 2003년 사업연도까지 채권잔액의 2%, 대손실적률 및 표준비율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산해 왔으나 2004년 의제사업연도(2004.1.1~2004.3.2)의 대손충당금 한도를 <표 12>와 같이 가장 낮은 비율인 채권잔액의 2%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낮게 설정하였다.

<표 12> 외환카드의 2004 의제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1. 장부상 대손충당금 계상액	1,478,366
2.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액=선택(①, ②)	83,128
① Max(㉠, ㉡)	83,128
㉠=채권잔액의 2%	83,128
㉡=채권잔액에 실적률 적용	914
② 표준비율	701,222
3.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1,395,238

주1) 자료 : 이호용(2011)의 p.41의 <표 17> 수정

<표 13>과 같이 외환카드를 합병한 외환은행의 대손충당금 변동상황을 보면, 합병연도의 대손처리액이 전년대비 1조 9,260억원이 증가한 약 220%를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외환카드로부터 승계받은 대손충당금이 1조 4,783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외환은행은 외환카드로부터 승계받은 대손충당금을 조세전략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합병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2.2~2.53%의 대손충당금 설정율을 나타내다가 합병 후 2005년

12)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사업목적의 합병,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및 구분경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손금불산입된 대손충당금을 피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부터 1.4%로 급격히 낮추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합병이 있었던 2004년에 집중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과 대손처리를 통해 외환은행의 조세부담의 최소화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13〉 외환은행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5	2004	2003	2002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566,995	871,228	987,080	835,041	987,759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127,490)	(346,180)	(956,087)	(701,506)	(770,586)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331,704)	(578,655)	(2,792,932)	(866,848)	(1,261,076)
② 상각채권회수액	210,242	244,683	358,479	165,342	491,371
③ 기타증감액	(6,028)	(12,216)	1,478,366	-	(881)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174,597	41,955	840,235	853,545	518,701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㉔)	614,102	566,995	871,228	987,080	735,874
5. 기말 충당금설정대상채권가액(㉕)	43,794,493	40,259,032	38,782,193	38,957,625	34,127,692
6. 대손충당금설정율(㉔÷㉕×100%)	1.4	1.41	2.25	2.53	2.20

주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 : //dart.fss.or.kr](http://dart.fss.or.kr))상 외환은행의 2002년~2006년의 감사보고서

3. 국민은행 사례와 외환은행 사례에서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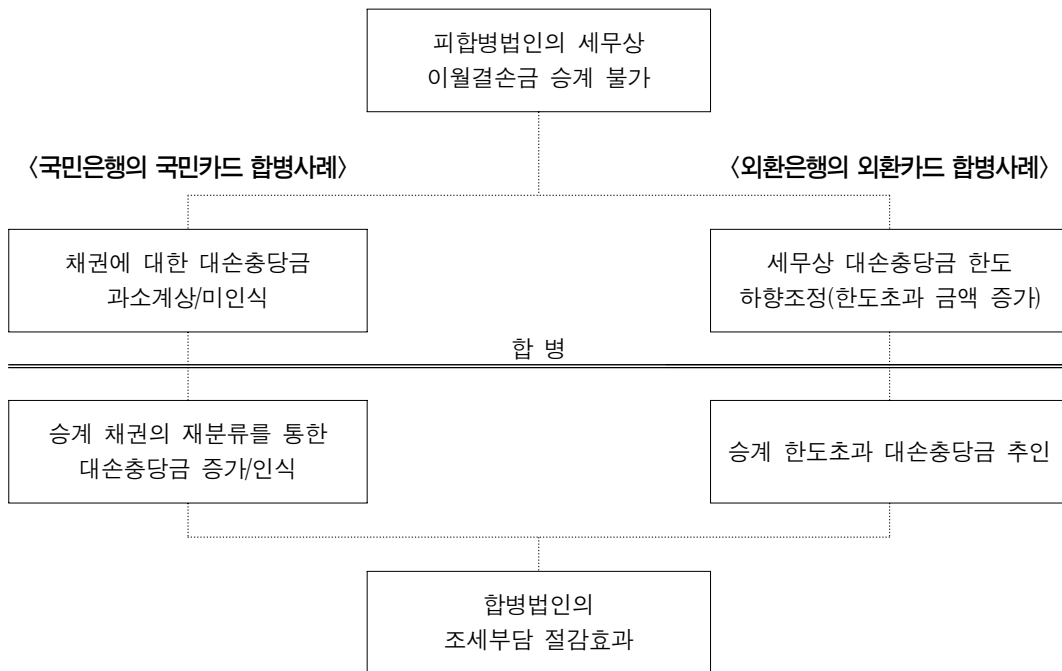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사례는 자회사인 신용카드사(국민카드,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즉,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인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는데, 국민은행은 국민카드 주주에게 2.42%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주에게 0.92%에 해당하는 신주를 합병교부금으로 발행하였기 때문에 각 카드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월결손금 승계의 대체안으로서 <그림 1>에서와 같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은 신용카드업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승계받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였는데, 이 두 은행간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에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냈다.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직전의 의제사업연도에 국민카드로 하여금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양질의 채권으로 분류토록 하여 손금산입시킬 대손충당금을 최소화였고, 합병 이후에 국민은행이 동 채권을 불량채권으로 재분류하여 손금산입해야 할 대손충당금을 극대화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낮추는 세무전략을 수행하였다. 반면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

하는 과정에서는 합병 직전에 외환카드로 하여금 세무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의 설정율을 적용시키도록 하여 손금불산입되는 대손충당금을 극대화시켰고, 합병 이후에 외환은행이 동 손금불산입된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아 조세부담을 낮추는 조세전략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합병 직전의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세무처리에 따른 조세절감 등 경제적 효과분석과 조세전략측면에서의 분석은 이후의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림 1〉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세무전략



IV. 합병시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의 효과분석

1. 세무상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의 경제효과 분석

가.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사례

국민카드는 합병 직전의 의제사업연도(2003.1.1~2003.9.30)에 금융감독원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으로 보유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약 1,266,405백만원을 설정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보유채권을 양질의 채권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합병법인인 국민은행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산출과정에서 합병시 국민카드로부터 승계받은 채권을 대손가능성이 높은 채권으로 재분류하여 동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932,001백만원을 손금산입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절감시키는 조세전략을 수행하였다.¹³⁾

합병 전후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법인세액 산출내역은 <표 14>와 같다. <패널 A>에서 국민카드는 2000~2001사업연도에는 법인세액을 부담하였지만 합병 직전 2002사업연도에는 390,721백만원의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흡수합병과정에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민은행은 이에 대한 대체안으로서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패널 B>에서와 같이 국민카드로부터 승계받은 채권을 대손가능성이 높은 채권으로 재분류하여 가능한 한 많은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여 회계상 결손(△753,348백만원)과 세무상 결손(△822,558백만원)을 발생시키면서 법인세액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본 세무상 결손은 합병 후 사업연도에 까지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다.

<표 14>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사의 법인세액 산출내역^{주1)}

<패널 A> 국민카드의 법인세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4년
당기순이익	301	458,195	△260,888	합병연도		
가산조정	153	242,379	35,930			
차감조정	△21	△30,382	△165,763			
각사업연도소득금액	432	670,192	△390,721			
이월결손금	0	0	0			
과세표준	432	670,192	0			
세율	30.80%	30.80%	29.70%			
산출세액	133	206,419	0			

13) 여기에서 제시된 대손충당금 금액은 2010구합26056(서울행법 2011.4.1 선고) 판결문에서 제시된 금액이다.

<표 14>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사의 법인세액 산출내역 (계속)

<패널 B> 국민은행의 법인세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4년
당기순이익	719,700	740,565	1,310,291	△753,348	555,250	2,252,218
가산조정	5,373,245	5,983,749	2,614,058	97,458	110,844	3,799,121
차감조정	△4,051,427	△5,751,890	△1,534,228	△166,668	△47,512	△3,271,766
각사업연도소득금액	2,041,518	972,424	2,390,121	△822,558	618,582	2,779,573
이월결손금	0	0	△95,807	0	△567,825	0
과세표준	2,041,518	972,424	2,288,705	0	618,582	2,779,573
세율	30.80%	30.80%	29.70%	29.70%	29.70%	27.50%
산출세액	628,788	299,507	679,745	0	15,075	764,383

주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상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2000년~2004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5)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조세전략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카드가 합병 직전 사업연도에 정상적으로 보유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를 가정하여 국민은행이 부담할 법인세액을 산출하고자 한다.¹⁴⁾ 먼저, 국민은행이 승계받은 채권을 자산건정성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932,001백만원을 장부상 비용(대손상각비)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계상 결손이 아닌 177,653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게 된다.¹⁵⁾ 이는 2003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이 아닌 세무상 과세표준액을 증가시켜 법인세 산출세액을 32,208백만원으로 산출된다. 또한 이 효과는 2004사업연도에까지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킴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이 183,719백만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14) 본 분석에서는 합병 전 국민카드가 1,266,405백만원 전액을 손금산입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기 장부상 결손 1,527,293백만원($=\Delta 260,888 + \Delta 1,266,405$)이 발생하고, 세무상 결손은 1,657,126($=\Delta 390,721 + \Delta 1,266,405$)백만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합병법인인 국민은행은 이 세무상 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한다.

15) 이 경우 국민카드는 177,653백만원 만큼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여 회계상 결손 26438,541($=\Delta 260,888 + \Delta 177,653$)백만원, 세무상 결손 568,374($\Delta 390,721 + \Delta 177,653$)백만원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 세무상 결손금을 국민은행이 승계하지 못하게 된다.

〈표 15〉 합병전 국민카드가 세무상 대손충당금을 인식한 경우의 부담세액^{주1)}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당기순이익	2,985,121	177,653 ^{주2)}	555,250	2,252,218
가산조정	4,007,423	97,458	110,844	3,799,121
차감조정	△3,485,946	△166,668	△47,512	△3,271,766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506,598	108,443	618,582	2,779,573
이월결손금	0	0	0	0
과세표준	3,506,598	108,443	618,582	2,779,573
세율		29.70%	29.70%	27.50%
산출세액	980,310	32,208	183,719	764,383

주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 : //dart.fss.or.kr](http://dart.fss.or.kr))상 국민은행 2003년~2005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5)

주2)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결산조정으로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 내에서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사로부터 승계받은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변화가 있다. 즉, 당기순이익은 177,653 백만원(=△753,348+932,001)이 된다.

〈표 16〉은 국민은행이 합병과정에서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을 수행한 결과와 조세전략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세전략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즉, 합병과정에서 국민카드가 정상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였다면 합병이후 2년간 법인세 산출세액이 215,927백만원이 되는 반면,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을 수행한 경우에는 15,075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조세전략을 통해 법인세 200,852백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16〉 국민은행 조세전략의 경제적 효과 : 절감세액 산출^{주1)}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① 대손충당금의 정상적인 인식시 산출세액	215,927	32,208	183,719
② 조세전략에 의한 산출세액	15,075	0	15,075
③ 조세전략의 경제적 효과(①-②)	200,852	32,208	168,644

주1) 2005년의 산출세액은 ①과 ②의 경우 모두 764,383백만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본 표에서 생략하였다.

나.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사례

외환카드는 합병 직전 의제사업연도(2004.1.1~2004.3.2)에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설정 대상채권가액에 2%(83,128백만원)와 대손실적률(914백만원)을 적용한 것 중 큰 가액과 표준비를 적용가액(701,222백만원) 중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작은 채권가액의 2%를 선택함으로써 합병법인인 외환은행이 승계받을 수 있는 한도초과 대손충당금을 극대화시키는 조세전략을 수행하였다.

<표 17>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전후의 법인세액 산출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표 17>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사의 법인세액 산출내역

<패널 A> 외환카드의 법인세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당기순이익	309,123	△52,377	△1,430	합병연도		
가산조정	13,787	27,355	767,174			
차감조정	△14,642	△49,238	△89,728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08,268	△74,260	676,016			
이월결손금	0	0	△676,016			
과세표준	308,268	0	0			
세율	30.80%	29.70%	29.70%			
산출세액	94,947	0	0			
<패널 B> 외환은행의 법인세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당기순이익	222,548	113,003	△213,817	522,067	1,929,327	1,006,167
가산조정	1,256,939	1,942,655	1,880,711	2,171,447	1,047,834	2,767,294
차감조정	△1,514,435	△1,495,221	△1,275,120	△4,052,735	△1,515,576	△2,412,691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4,948	560,437	391,774	△1,359,221	1,461,585	1,360,770
이월결손금	0	△560,437	△391,263	0	△1,461,585	△463,525
과세표준	0	0	511	0	0	897,245
세율	30.80%	29.70%	29.70%	29.70%	27.50%	27.50%
산출세액	0	0	151	0	0	246,742

주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상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2001년~2006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5)

먼저, 외환카드의 법인세액 산출과정인 <패널 A>에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2년 간 결손발생과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음으로써 법인세액이 없는 상황이었고, 2003사업연도의 세무상 누적 이월결손금이 757,275백만원이었다. 하지만 합병법인인 외환은행이 이러한 외환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외환카드의 세무상 한도초과 대손충당금 1,396,362백만원을 승계받을 수 있는 세무전략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세무전략은 <패널 B>에서와 같이 2004사업연도의 차감조정액 △4,052,735로 전 사업연도 대비 167.4%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외환은행은 합병시 승계받은 한도초과 대손충당금으로 인해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1,359,221백만원으로 2005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¹⁶⁾

이렇게 외환은행의 조세전략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표 18>과 같이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시 표준비율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얼마나 세액을 절감시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환카드가 합병 직전 의제사업연도(2004.1.1~2004.3.2)의 대손충당금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표준비율을 적용하였다면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 777,144백만원¹⁷⁾, 그리고 이 금액을 외환은행이 승계받아 2004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여 차감조정액은 △3,433,517백만원이 된다. 결국 세무상 당기결손이 618,094(=1,359,221-741,127)백만원이 감소하여 2005사업연도 이후의 공제받을 이월결손금액이 작아지게 된다.¹⁸⁾

- 16) 본 외환은행의 경제적 효과에서 사용된 금액은 국심2007서4945(2009.9.4)의 결정문에 있는 금액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 결손금과 차년도 이월결손금의 차이에는 소득공제 등의 사항이 존재하거나 5년(10년)전의 결손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17) 외환카드가 합병 직전 의제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한도에 표준비율을 적용하였다면 한도금액은 701,222백만원이 되며, 한도초과액(외환은행이 승계받는 대손충당금)은 777,144(=1,478,366-701,222)백만원이 된다.

구 분	금 액(백만원)
1. 장부상 대손충당금 계상액	1,478,366
2.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액=선택(①, ②)	701,222
① Max(①, ②)	83,128
①=채권잔액의 2%	83,128
②=채권잔액에 실적을 적용	914
② 표준비율	701,222
3.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777,144

- 18) 이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777,144백만원은 외환카드의 회계상 결손 가산세무조정액을 전액 감소시키면서 세무상 결손 91,158백만원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외환카드의 최소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767,174백만원(=△91,158+△676,016)을 외환은행이 승계받지 못하게 된다.

〈표 18〉 합병전 외환카드가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시 표준비율을 적용한 예상 부담세액^{주1)}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당기순이익	3,457,561	522,067	1,929,327	1,006,167
가산조정	5,986,575	2,171,447	1,047,834	2,767,294
차감조정	△7,361,784	△3,433,517 ^{주2)}	△1,515,576	△2,412,691
각사업연도소득금액	2,081,228	△741,127	1,461,585	1,360,770
이월결손금	△1,307,015	0	△1,307,015	0
과세표준	1,515,340	0	154,570	1,360,770
세율		29.70%	27.50%	27.50%
산출세액	416,719	0	42,507	374,212

주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상 외환은행 2004년~2006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5)

주2) 외환은행의 2004 사업연도 손금추인된 한도초과 대손충당금 777,144백만원으로 손금산입액은 3,433,517 (=4,052,735 - (1,396,362 - 777,144))백만원이 된다.

〈표 19〉는 외환은행이 수행한 세무전략의 경제적 효과로서 절감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합병 직전에 외환카드가 적용해 오던 표준비율로 대손충당금한도를 설정했을 경우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 산출세액이 총 416,719백만원인데 반해, 합병 직전 사업연도에 외환카드가 대손충당금 한도를 최소화하여 외환은행에게 승계한 조세전략의 결과, 법인세 산출세액은 246,742백만원으로 외환은행의 조세전략의 효과는 169,977백만원으로 추정된다.

〈표 19〉 외환은행 조세전략의 경제적 효과 : 절감세액 산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① 표준비율을 적용시 산출세액	416,719	0	42,507	374,212
② 조세전략에 의한 산출세액	246,742	0	0	246,742
③ 조세전략의 경제적 효과(①-②)	169,977	0	42,507	127,470

V. 연구의 요약 및 결론

2000년대에 들어와 신용카드사들의 과다경쟁 및 경영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로 자회사인 신용카드사를 모회사인 은행이 합병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합병사례 중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은 합병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있었다.

본 연구는 합병법인과 과세관청 간의 분쟁사례 중에서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일정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데, 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서 대손충당금을 활용하여 조세전략을 수행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의 대상사례는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사례와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사례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기준일 2003년 9월 30일부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568,374백만원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국민카드가 보유한 신용카드채권 등에 대하여 자산건정성 분류기준에 따른 일정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대신 동채권을 양질의 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인식하였다. 그리고 합병 후 국민은행은 승계받은 동 채권에 대하여 177,653백만원 만큼 대손충당금을 인식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줄이는 조세전략을 수행하였다. 결국, 국민은행은 본 조세전략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부담할 법인세 215,927백만원보다 200,852백만원을 절감한(93.02%를 절감한) 15,075백만원을 부담하였다.

둘째, 합병기일 2004년 2월 28일부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767,174백만원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환카드의 세무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정상수준인 701,222백만원이 아닌 83,128백만원으로 최소의 한도액을 설정함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을 발생시켰다. 또한 합병 이후 외환은행은 동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을 손금추인함으로써 법인세부담액을 줄이는 조세전략을 수행하였다. 즉, 정상적인 수준에서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설정하였다면 416,719백만원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했는데, 본 조세전략을 수행함으로써 169,977백만원을 절감한(40.79%를 절감한) 246,742백만원만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은행 합병사례와 외환은행 합병사례를 통해 세무상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산조정사항인 대손충당금을 활용하여 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세전략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분석은 세무회계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조세전략에 대한 학습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무에서 합법적인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실무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박미희·육운복. 2011.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실제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관계”,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1호 : 265-294.
- 박연희. 2005.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 및 BIS자기자본비율관리”, 세무와회계저널 제6권 제3호 : 67-85.
- 이호영·최원석. 2012. “합병시 이월결손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승계에 관한 조세전략 사례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113-140.
- 전병욱·최원욱. 2007. “엔화스왑예금 거래의 과세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연구”. 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 161-188.
- 정운오·고종권. 2007. “D사의 국제조세리스”. 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 79-104.
- 정운오·김갑순. 2007. “A회사의 Corporate Trade 사례”. 세무학연구 제24권 제3호 : 205-227.
- 정운오·김갑순·전병욱. 2008 “세무상 이월결손기업과의 합병 -하나은행 사례-”,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 163-195.
- Scholes, M. S., M. A. Wolfson, M. Erickson, E. L. Maydew, and T. Shevlin, 2002.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Prentice Hall.

A Case Study on Tax Strategies Using Bad Debt Allowance

- The Case of KB Kookmin Bank and Foreign Exchange Bank -

Yoon, SungMan*

— <Abstract> —

The merger entity can take over the assets, liabilities and income, etc. net operating losses(NOL) of merged entity, only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of corporation tax law in the course of the merging. However, the merger entity can execute many of the tax strategies in order to reduce the tax burden of the merged entity in the case that the merger entity can not succeed the NOL of the merged ent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x strategy cases to reduce the tax burden of the merged entity, using the tax bad debt allowance in the situation that merged entity does not succeed to the NOL of the merged corporation. Especially, the merging case of KB and KB Card in this study in 2003 on October 1, and a merging case of FEB and FE card merger case in March 2, 2004.

First, KB, in the process of merging the KB Card, faced the situation that it does not succeed to NOL of KB cards, asset KB Card caused by an allowance for credit cards and credit card receivables in accordance with the qualitative classification to ever classify bonds, bonds with high quality was recognized an allowance in the amount of the minimum. The reason for this is if the allowance is recognized NOL. This is because they did not receive the succession. After the merger, and KB could not reduce the tax burden as much as possible by recognizing the allowance for credit card receivables and succession received. In this analysis it was estimated that the savings in this KB of the tax burden would have to pay for if you have not done the same strategy to 93.02% effective tax strategy about 200,852 million won.

Second, FEB selected the minimum rate, amount deductible, set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FE card in the situation that it does not succeed to NOL of FE card. FE card to allow tax deductible allowance limit inclusion was counted maximize allowance.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such a tax strategy FEB was estimated savings of approximately 40.79% to 169,977 million won of the tax burden on the FE card if you select the top level of tax deductible allowance limit inclusion.

<Key words> Bad Debt Allowance, NOL, Tax Strategies, Merger, Bank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sm6123@seoultech.ac.kr